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지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금의 납입이 필요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주주배정 방식으로 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천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 ④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 시에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법에 따른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에는 등기실무상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문37】발행주식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주식의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소각한 주식 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38】회사의 상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은 등기할 수 없다.
- ②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 ③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 부터 발생한다.
- ④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유한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문39】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 ② 재판으로 청산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의 취임등기 또는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문40】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과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1】상업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법원이 등기관에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⑤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문42】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도 전자문서로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③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43】비송사건과 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②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③ 사임하였지만 이사 원수(員數)의 부족으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퇴임한 이사 甲의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때에는 임시이사의 선임등기 없이도 甲 이사의 퇴임등기만 할 수 있다.
- ④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해 의결 권한이 있지만,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해 의결권한이 없다.
-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그 이사 외에 따로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64조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문44】다음 중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여 해당 등기 신청이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처음 설치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 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 이사직을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員數)는 결(缺)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본점 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문45】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 ②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말소된다.
- ③ 등기관이 분할합병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임원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필요성은 없다.
-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 마쳐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사의 취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문46】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 ②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③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7】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된다.
- ④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문48】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②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아니면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직위에 재선되어 취임하였다면 중임(重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

【문49】상법 제407조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의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
- ②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 중요재산의 매각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상무 외 행위이다.
- ③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송당사자인 회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다.
- ④ 직무대행자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문50】합병,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 ②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익에 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익을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 ③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할합병계약을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 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 ⑤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이익제출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착오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문을 첨부한 합병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